#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r> 심 사 보 고 서 

2009. 12. 24(목)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권광택 의원 외 7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10월 16일
-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2.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심흥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을 도모하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시행상 제기 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0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3조)
$\bigcirc$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자금 근거 마련(안 제5조)
○ 벤처기업과 기술력 우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조항 신설(안 제9조)

○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규정(안 제9조의4)

## 3. 검토보고 요지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을 도모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 을 청취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무숮ㅇ 이유
○ 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
ㅁ 수정 주요내용
○ 안 제 4 조제 1 항 제 4 호중 "차입금"을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으로 함.
○ 안 제6조제 1 항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 안 제 13 조제 4 항제 5 호중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함.

○ 안 제 15 조제 2 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함.

##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bigcirc$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9. 12. 16
제 안 자 : 민경환 의원외

ㅁ 수정 이유
○ 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

ㅁ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제4호중 "차입금"을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으로 한다.
$\bigcirc$ 안 제6조제1항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 안 제 13 조제 4 항제 5 호중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한다.

○ 안 제15조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 4 조제 1 항 제 4 호중 "차입금"을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으로 한다.
○ 안 제6조제 1 항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 안 제 13 조제 4 항제 5 호중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한다.

○ 안 제15조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헌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 :---: |
| 제 4 조(기금의 조성) <br> (생 략) <br> 1. ~ 2. (생 략) <br> 3. 중소기업진훙및제품구 매촉진에관한법률 제 11 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진훙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br> 4. 기타 출연금, 보조 금, 차입금 및 융자 상환금 <br>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1)(생 략) 1. ~ 9. (생 략) <br> 제 13 조(융자심의 위 원회 의 설치 및 운영) <br> (1) ~ (3) (생 략) <br> (4) (생 략) | 제4조(기금의 조성) <br> (현행과 같음) <br> 1. ~ 2. (현행과 같음) <br> 3. 「중소기업진훙에 <br> 관한 법률」제63조---- $\qquad$ 중소기업창 <br> 업 및 진홍기금의 출연 금 및 융자금 <br> 4. $\qquad$ 차입금 <br>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1)(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br> 제 13 조(융자심의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1) ~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 제4조(기금의 조성) <br> (개정안과 같음) <br> 1. ~ 2. (개정안과 같음) <br> 3. (개정안과 같음) <br> 4. $\qquad$ <br> ---, 차입금 및 융자 <br> 상환금 <br>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br> (1)(개정안과 같음) <br> 1. ~ 9. (개정안과 같음) <br> 10. 벤처기업 등 기술 <br> 력 우수기업 <br> 제 13 조(융자심의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br> (1) ~ (3)(개정안과 같음) <br> (4)(개정안과 같음) |


| 헌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 :---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제133조＂를＂제1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중소기업자＂라＂를＂＂중소기업＂이라＂로，＂중소기업자를＂을 ＂중소기업을＂로，

같은 조 제2호 중＂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 4 호 중＂제 7 조제 1 항＂을＂제 10 조＂로，
같은 조 제6호 중＂제28조의2의제1항＂을＂제28조의2제1항＂으로，＂설립승 인．＂을＂설립승인，＂으로

같은 조 제7호 중＂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를＂「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로， 같은 조 제9호 중＂＂중소기업종합지원쎈터＂＂를＂＂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 원센터（이하＂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동 시행렁＂을＂같은 법 시행령＂으로，＂도조례＂를＂충청북도 조례＂로，

같은 조 제 10 호 중＂＂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을＂＂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 업＂＂으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중소 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중＂기금의 설치＂를＂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세입•세출외로＂를＂세입•세출예산 외로＂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하며，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 중＂중소기업진훙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훙에 관한 법률」제63조＂로，＂중소기업진훙 및 산업기반기금
의 예수금 및 출연금＂을＂중소기업창업 및 진훙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으로 각각 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

제 5 조제 3 항을 삭제하고，같은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기금 중 여유자금은「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다만，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을 제4항으로，제6항을 제5항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제6조제2항 중 "제5항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중소기업진훙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훙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으로 한다.

제 8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도지사는 제 4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훙기금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을 중소기업진훙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훙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받을 때의 절 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 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개체소요자금"을 "대체소요자금"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을 "사업을"로 각각 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9조제7항의 항 번호를 제9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 1항 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9조제 8 항의 항 번호를 제 10 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 7 항"을 "제1항 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기금 중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9조제 8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도지사는 제 1 항, 제 6 항, 제 7 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중소기 업대상 수상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1)도지사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자금지원 기업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와 대응투자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 조의 4 (특별자금지원) (1)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격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 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 한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지역과 업종
2. 지원조건
3. 그 밖의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 13 조제 4 항제 3 호 중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 지역본부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 인"을 "충청북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명"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중소기업 육성 중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팀장"을 "중소기업 육성 중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각 각 한다.

제13조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 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 17 조제 2 항 중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게"를 "충청북도의회에"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출납을"을 "관리를"로, "사업담당국•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 으로, "사업담당과•팀장"을 "사업담당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9조제2항 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 2 조제 10 호와 제 4 조제 1 항제 3 호의 개정규 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square$ 지방자치법

제 142 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 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한다.
(3)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를 말한다.

## $\square$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0 조 (육성계획의 수립) (1)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 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관할구역내 지방중소기 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 일까지 행 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8.2.29>
(2)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 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 1 호 내지 제 5 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42 조（육성계획의 조정）（1）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획간에 중 복 또는 상충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2005．11．8，2008．2．29＞
（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 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7．12．13＞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 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square$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1）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각종 산업 • 금융 • 경영 • 산업기술 • 무역정보등의 제공
2．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2）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 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개정 1996．2．9＞
（3）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 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개정 1996．2．9＞

## $\square$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1）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 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 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5．11＞

## $\square$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 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 10 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 20 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 서 제 31 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 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 10 조（등록）（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1．창업자에 대한 투자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 른 해외투자
5．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square$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0，2005．12．23，2008．2．29，2008．3．21＞
5．＂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 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square$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27＞
1．＂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훙을 위한 단체
2．＂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 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 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 발을 하는 것
나．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삭제 <2007.12.27>
라. 삭제 <2007.12.27>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바. 삭제 <2007.12.27>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9. "협업"이란 여러 개의 기업이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 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 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개정 2008.12.19>) 정부는 중소기 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 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훙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 $\square$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1)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square$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개정 2007.8.3>) (1)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 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2)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 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3) 삭제 <2006.3.3>
(4)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렁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 18 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 28 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 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 역으로 집단화•협업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7)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8）＂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 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 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8．3＞
（9）＂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창업 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7．8．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1）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8．3＞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 서＂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 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 는 자（이하＂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제 4 조의 3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제 4 조의 8 에 따른 전담회사
（7）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

나．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 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 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기술신용보증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중소기업진훙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훙공단（이하＂중소기업진훙공단＂이라 한 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 을 것
（2）제1항제 2 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8．3］

